



**2017-2018**

**무단결석 및 지각에 대한 학부모/학생 통고서**

학부모/후견인은 학생의 학교 복귀 3 일 이내에 결석을 해명해야 합니다. 학부모/후견인은 결석 해명을 위해 자녀의 학교 출석부로 전화 연락 또는 이메일을 할 수 있습니다. **학생의 학교 복귀 3 일 이내에 해명되지 않은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자동 기록되며 더이상 해명할 수 없습니다**

**무단결석:**

의무적 정규 교육 또는 의무적 보습 교육을 받아야 할 모든 학생은 한 학사년에 유효한 허가없이 3 일의 정규 수업일을 온종일 결석하거나, 한 학사년에 유효한 허가없이 3 번에 걸쳐 수업일 동안 30 분 이상의 지각이나 결석 또는 그것의 어떤 결합의 무단결석은 출석 수퍼바이저 또는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보고된다.

**점진적인 무단결석 중재**

- 3 번째 무단결석:** 학부모/후견인에게 모든 지각 및 결석을 알리는 첫 번째 서한이 우송된다.
- 5 번째 무단결석:**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60 에 의거하여 학부모/후견인에게 학생이 무단 결석생임을 알리는 두 번째 무단결석 서한이 우송된다. 학생은 학교 행정관과의 학교 출석 검토팀 (SART) 모임에 소개되고 공식적인 출석 약정서에 서명한다.
- 10 번째 무단결석:**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60 에 의거하여 학부모/후견인에게 학생이 무단 결석생임을 알리는 세 번째 무단결석 서한이 우송된다. 학생은 학교 출석 검토위원회(SARB) 모임에 소개된다.

**점진적인 지각 중재**

**지각 방침**

학생이 출석으로 간주되기 위해선 교시 수업 시작 시 자신의 자리 또는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 학생이 별도로 3 회 - 수업에 30 분 또는 그 이상 지각 및/또는 학교 수업이 끝나기 30 분 전에 픽업된 경우, 하루 결석으로 기록된다.(예: 30 분 또는 그 이상의 지각 3 번 = 1 일 결석). 학부모/후견인들은 모든 지각 및 결석에 대해 블랙보드 커넥트(BlackBoard Connect)를 통해 통고된다.

- 9 번째 지각:** 학부모/후견인에게 지각/무단결석을 알리는 첫 번째 서한이 우송된다.
- 15 번째 지각:**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60 에 의거하여 학부모/후견인에게 학생이 무단 결석생임을 알리는 두 번째 지각/무단결석 서한이 우송된다. 학생은 학교 행정관과의 학교 출석 검토팀 모임에 소개되고 공식적인 출석 약정서 서명한다.
- 30 번째 지각:**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60 에 의거하여 학부모/후견인에게 학생이 무단 결석생임을 알리는 세 번째 지각/무단결석 서한이 우송된다. 학생은 학교 출석 검토위원회 모임에 소개된다.

Revised date 8/17/2017